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39

발의연월일: 2022. 6. 24.

발 의 자:이달곤·김예지·김용판

박대수 • 박덕흠 • 서병수

서일준 · 이채익 · 정점식

조경태 · 조수진 · 하영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 장기화와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u>2022년 12월 31일</u> 까	<u>2027년 12월 31일</u>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